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9
----------	-----

2023. 10.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구청장(재난안전과)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위원회안(대안) 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신설)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조항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3조제2항 및 제6항, 안 제6조 및 제12조~제13조)
- 나.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 반영을 위한 조항 정비(안 제3조제4항~제5항, 안 제7조, 안 제9조~제11조, 별표)

- 다. 임원 구성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3조제1항)
- 라. 단장의 해촉 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마. 소집수당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4항~제9항)
- 바. 재해보상금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사.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변경 및 띄어쓰기·자구 등을 정비함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에 소집수당 7,888천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5. ~ 2023. 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조례상 마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이 신설(2017.10.24.)된 내용과 그 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2019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제출되었음.

2 주요 개정내역 검토

가. 자율방재단 조직 구성(안 제3조)

-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① 자율방재단을 전문성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능에 따라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4항), ② 각 반별 대표와 부대표 선출 방식을 정하며(안 제3조제5항), ③ 자율방재단 참가자격을 명시(안 제3조제6항)한 바, 그 조직을 단장1명, 부단장 2명, 간사1명 등으로 구성하였음.(안 제3조제1항)

※ 현행 조례에서는 부단장이 1명인 바, 개정안은 2명으로 개정하였음.

- 자율방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한 조례상 조문 개정은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정한 바를 기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임.

나. 단장 해임 및 해촉(안 제5조)

- 개정안(제5조)은 자율방재단 단장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유사한 사례¹⁾와 비교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다. 소집수당 신설(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u>협의</u> 해야 한다.	제7조(소집 등) ① ----- ----- ----- ----- <u>협의하여야</u> --.
② 소집방법은 <u>방재단 관리시스템, 전화</u>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 <u>전화</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법위 내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신설>	<u>⑤ 소집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u>
<신설>	<u>⑥ 소집수당은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 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u>
<신설>	<u>⑦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u>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²⁾가 ‘소집수당’ 제도를 채택하는 내용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6.>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6. 16.>
-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으로 개정(2020.6.16.)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교육 및 훈련은 제외, 안 제6조제4항)에 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하고(안 제6조제5항) ③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에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되(안 제6조제6항) ④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하였음.(안 제6조제7항)

- 위 소집수당은 우리 관내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율방재단원이 구청장의 소집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안에 반영되었음.
 - 자율방재단원 소집 수당 제도 채택 여부는 구청장의 재량 사항이라는 점에서 채택 시기 등에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기후 변화 등에 따른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강남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분야에 관한 중앙정부의 주요한 결정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수용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집행부는 자율방재단원 소집수당 채택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음.

2021. 7월 재해보상금과 소집수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절차를 입법예고 전 단계까지 진행하였으나, 소집수당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등 타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자치구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음.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개구 조례 개정)

* 재해보상금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2017.10.24. 개정)

소집수당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2020.6.16. 개정)

라. 재해보상 제도 신설(안 제21조)

개 정 안 (신설)

제21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³⁾이 신설된 바(2017.10.24.), 이를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2019년)이 마련됨에 따라 제출된 개정안이라고 하겠음.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의 보상금 제도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 제11조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⁴⁾을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금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소집수당 제도 신설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재해 보상제도’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속하지 않는 임의적 선택 재량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고도의 판단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 고도화된 한국 사회가 기후 변화 등 각종 위험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안전 확보 및 예방 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국회 및 중앙정부가 인지하여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각종 처우와 예우를 향상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관심을 보였는지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결론

-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강남구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은 23년 1월 기준으로 291명이며, 2023년도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으로 6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참고자료 참조)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6.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질 의 : 제7조에서 소집방법 중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삭제하는 개정안 내용이 있으므로, 제8조 방재단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의 내용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답 변 : 현재 방재단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소집방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제8조의 내용은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향후 구축된다면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제8조는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질 의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재해보상이나 소집수당에 관한 근거나 표준조례안이 하달된 게 언제인가, 조례 개정이 지연된 것은 아닌가
- 답 변 : 표준조례안과 근거는, 재해보상 2017년, 소집수당 2020년에 하달되었음. 당초 2021년 7월에 조례 개정절차를 입법예고까지 전까지 추진하였으나 소집수당과 관련해 자율방범대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이 미루어짐.

7. 토론 요지

- 구청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외에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용어의 간결화 및 표현 수정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상정·안건 처리함

8. 심사 결과 : “위원회안(대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관련의안번호

제277호

발의일자 : 2023. 10. 16.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신설)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조항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범위 내”, “해임 및 해촉” “ ~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유사한 표현의 중복을 없애 조문을 간결히 하고자 제목과 조문의 개정 사항을 추가

2. 대안의 주요내용

- “해임”과 “해촉”의 의미를 구별하여, 적절한 용어로 “해촉”을 선택하여 조의 제목과 조문을 수정함(안 제5조)
- 교육과 훈련 관련 규정을 간결하게 수정함(안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에 소집수당 7,888천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5. ~ 2023. 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명, 간사 1명 및”을 “2명, 간사 1명, 대표, 부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 대표”를 “대표”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별표와 같이 각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⑤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대표는 해당 반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중 “비상연락망정비”를 “비상연락망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반을”을 “해당 반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해임)”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임”을 “해촉”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제1항 중 “예방·대비, 대응, 복구”를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임무 및”을 “임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고”를 “신고·정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피소”를 “대피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통제”를 “통제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재난발생 시”를 “재난발생 시”로, “응급구호 및 통신·연락체계 유지, 교통통제”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집)”을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해야”를 “협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단 관리시스템, 전화”를 “전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소집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⑥ 소집수당은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 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비상단계시 재난종합상황실”을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무등”을 “임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식대, 여비, 유류대”를 “식비, 여비, 유류비”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청장 및 단장”을 “구청장”으로, “자원봉사활동 증명서”를 “봉사활동증명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을 “단장 및 단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것을 원칙”을 “것”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것을 원칙”을 “것”으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임무(제3조 관련)

구분	반	임무 및 역할의 내용	관련단체
강남구 자율방재단		- 재난재해 위험요소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 방재관련 교육·훈련 - 대표단 대표자회의 참석 - 반별 그룹회의 및 방재활동	-
	일반 조직 (22개반)	- 단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운영, 대피소운영 - 현장운영반 및 대피소운영반 등 편성 지원	-
전문 조직 (10개반)	현 장 운영반	- 방재단 총괄지휘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 위험지역, 재해약자 파악 및 유사시 주민대피 유도 - 피해지역에 현장사무실 설치 및 현장상황 총괄 - 자원봉사자 배치 - 인적, 물적 자원 수요처 발굴 및 연결(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피해신고서 작성지원(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현장상황 및 피해지역 조사·보고	대한적십자 새마을협회 라이온스 로터리클럽
	대피소 운영반	- 대피소 점검 및 물품 확인 - 대피장소의 쾌적한 환경조성 - 이재민 의료·생활·학습·환경 지원 등 위로활동 - 대피소내 급수·급식 및 구호물품 보급 지원 - 대피장소 질서유지 및 화재예방 - 재해주민의 가족 찾기 등 인접 대피장소와 연락 - 현장운영반에 상황전달 및 연락체계 유지	주부연합회 YW(M)CA

구분	반		임무 및 역할의 내용	관련단체
전문 조직 (10개반)	인명구조반		- 인명구조, 피해지역 순찰 및 차량운행 -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순찰, 차량통행로 확보	해병전우회 민간인명구조단
	급수·급식반		- 식수차량을 활용한 식수 보급 - 음식 및 요리사 지원	차량소유자 요식업협회
	교통통제반		- 피해지역 교통 통제 및 정리	모범운전자회
	의료 구호 방역반		- 피해주민 건강진단, 부상자 치료, 심리상담 등 - 구호물품 접수·운반 및 지급 - 피해지역 방역실시	의사·간호사협회 관련단체 자율방범대
	건물 복구반	보일러	- 피해가구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난방시공협회
		전기	- 피해 전기시설 긴급 조치	한국전기공사 등
		가스	- 피해 가스시설 긴급 조치	가스협회
		수도	- 피해지역 상·하수도 긴급 조치	상·하수도협회
		도배	- 피해주택 도배·장판 등 지원	지역내 관련단체
	통신반		- 피해지역 통신확보 및 상황전파	아마추어무선
	차량·장비지원반		- 차량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물자수송 및 대피지원 -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순찰, 차량통행로 확보 - 중장비지원 및 복구지원 등	짚차 동호회 건설기계협회
	기 타		- 피해원인 진단 및 재발방지대책 협의	대학연구소 및 건축사협회

[별지 제11호 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 ③, ④, ⑦, ⑧), 2. 장해보상(①, ②, ③, ④, ⑦, ⑧) 3. 장제보상(③, ④, ⑤, ⑥, ⑦, ⑧), 4. 유족보상(③, ④, ⑤, ⑦, 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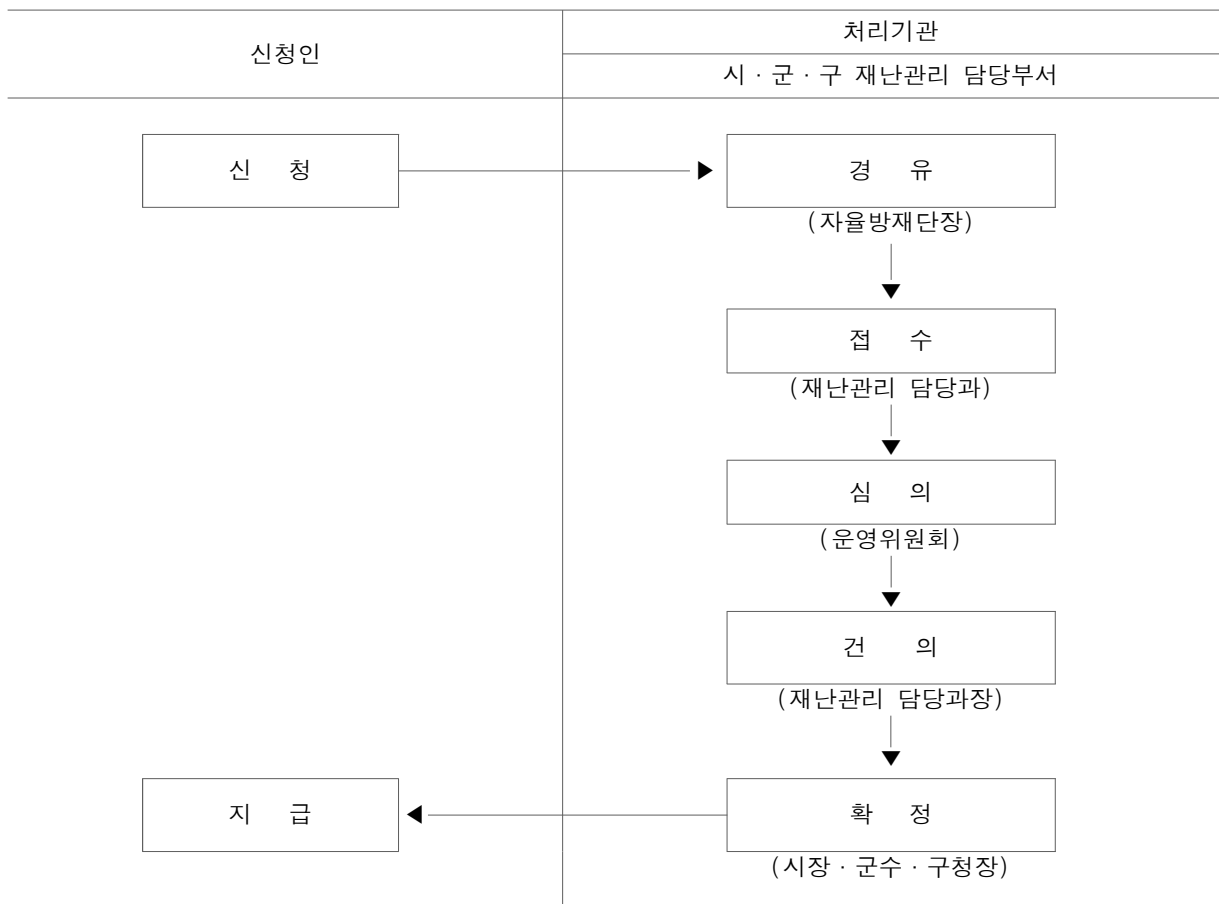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대안)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① ----- ----- 2명, 간사 1명, 대표, 부대표, -----.	(개정안과 같음)
② 단장은 반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u>구청장</u> 이 위촉한다	② ---- <u>대표</u> ----- -----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 희망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별표와 같이 각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음)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	⑤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대표는 해당 반 단원의	(개정안과 같음)

여 구성하며, 단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⑥ 일반조직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각 동 반을 구성하고, 전문조직은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별표와 같이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건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 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⑦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해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⑧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강남구에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을 원칙
으로 하되, 방재 업무상 단장은 필
요한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③ (생
략)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
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정비,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반을 대표하며, 부대표
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가 불가
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행한다.

⑥ (생략)

제5조(해임) <신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비상연락망 정비-----
-----.

⑤ ----- 해당 반을 -----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단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5조(해촉) 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
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

(생략)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 및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 5. (생략)

제6조(임무) ① ----- 예방·대비·대응·복구 ----- 임무의 -----.

② -----.

1. (현행과 같음)

2. -----

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고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생략)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
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6. ~ 9. (생략)

10. 재난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응급구호 및
통신·연락체계 유지, 교통통제
등 활동 전개

③ (생략)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
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고·정비

3. ----- (개정안과 같음)
----- 대피소 등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5. ----- (개정안과 같음)

----- 통제 등

6.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10. 재난발생시 ----- (개정안과 같음)
----- 구조 및 연락체
계 유지, 차량통제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7조(소집 등) ① ----- (개정안과 같음)

----- 협의하여야 --.

② 소집방법은 방재단 관리시스템,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 전화 -----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소집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⑥ 소집수당은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에 합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등

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 임무 등-----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u>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 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	----- -----.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재난위험요인 신고)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신고를 장려하기 위 해 제1항의 신고를 한 단원에게 <u>신 고포상금</u>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위험요인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예 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u>----- -----.	(개정안과 같음) ③ ----- ----- <u>예산 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u>----- -----.
제11조(지원 등)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 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 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 무수행으로 사용되는 <u>식대, 여비,</u>	제11조(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1. ----- ----- <u>식비, 여비,</u>	제11조(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 6. (생략)

④ (생략)

⑤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제13조(출입증의 발급) ① (생략)

② 구청장이 발급한 출입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4조(교육) ① -----

유류비 -----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

----- 봉사활동증명서-----

-----.

제1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

-----.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출입증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4조(교육) ① -----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제15조(훈련) ① -----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 설>

제21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

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

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

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

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것으로 하고, -----

제15조(훈련) ① -----

것으로 한다. -----

(개정안과 같음)

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u>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u>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 <u>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u> ⑤ <u>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u>	
<u>제21조 (생 략)</u> <u>별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임무(제3조 관련)</u>	<u>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u> <u>별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임무(제3조 관련)</u>	(개정안과 같음) <u>별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임무(제3조 관련)</u>

[별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임무(제3조 관련)

구분	면	항목	임무 및 역할의 내용	비고
강남구 자율방재단	강남구 면	강남구 면	- 재난재해 위험요소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 방재활동 교육훈련 - 대표단 대표자회의 참석 - 민방 그룹회의 및 방재활동	
	강남구 면	강남구 면	- 단장의 지시에 따라 방재활동, 대피소운영 - 긴급복구반 등 방재 지원	
	강남구 면	강남구 면	- 방재단 총괄지휘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 위험지역, 재해위험 지역 및 유사시 주민대피 유도 - 피해지역에 현장사무소 설치 및 방재상황 총괄 - 자원봉사자 배치 - 인력, 물자 지원 수요조사 및 연결(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피해신고서 작성지원(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방재상황 및 피해지역 조사·보고	
	강남구 면	강남구 면	- 대피소 운영 및 물품 확인 - 대피장소의 쾌적한 운영조성 - 이재민 의료·상담·복합·환경 지원 등 복원활동 - 대피소내 급수·급식 및 구급활동 보충 지원 - 대피장소 질서유지 및 화재예방 - 재해주민의 가족 찾기 등 인근 대피장소와 연락 - 현장활동만에 상용전동 및 연락체계 유지	

[별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임무(제3조 관련)

구분	면	항목	임무 및 역할의 내용	비고
강남구 자율방재단	강남구 면	강남구 면	- 재난재해 위험요소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 방재활동 교육훈련 - 대표단 대표자회의 참석 - 민방 그룹회의 및 방재활동	-
	강남구 면	강남구 면	- 단장의 지시에 따라 방재활동, 대피소운영 - 긴급복구반 등 방재 지원	-
	강남구 면	강남구 면	- 방재단 총괄지휘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 위험지역, 재해위험 지역 및 유사시 주민대피 유도 - 피해지역에 현장사무소 설치 및 방재상황 총괄 - 자원봉사자 배치 - 인력, 물자 지원 수요조사 및 연결(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피해신고서 작성지원(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방재상황 및 피해지역 조사·보고	다함경남자 새마을봉사 라이온스 프런티어
	강남구 면	강남구 면	- 대피소 운영 및 물품 확인 - 대피장소의 쾌적한 운영조성 - 이재민 의료·상담·복합·환경 지원 등 복원활동 - 대피소내 급수·급식 및 구급활동 보충 지원 - 대피장소 질서유지 및 화재예방 - 재해주민의 가족 찾기 등 인근 대피장소와 연락 - 현장활동만에 상용전동 및 연락체계 유지	주부연합회 YWIMICA

(개정안과 같음)

[illegible]

<신 설>

[illegible]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1호 사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위키의 업무시행방법을 확인 후 해당사항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필수)

※ 신고 접수 후 제출서류 보정기간은 지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발급번호	발급일	지체기간: 30일
사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장제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일과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발급요청	1. 화상 [] 2. 구토 [] 3. 구멍 [] 4. 기타 []	
	요양(장제)발생	요양(장제)부위
	요양(장제)일과	요양(장제)기간
	요양보상	장제보상
청구금액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 의거 하여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와 사실과 부합함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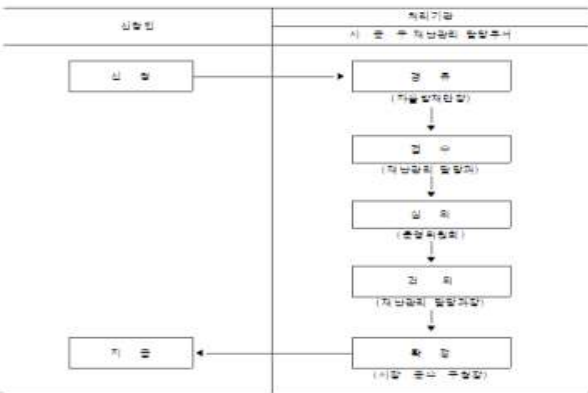
년 월 일

인감: (서명 또는 인)

경남구경장 귀하

图 10-1-1 为《中国人口》一书封面，其设计特点如下：

(서명 또는 인)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대안)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① ----- ----- 2명, 간사 1명, 대표, 부대표, -----.
② 단장은 반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u>구청장</u> 이 위촉한다	② ----- 대표 -----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 희망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별표와 같이 각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단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⑤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대표는 해당 반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⑥ 일반조직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각 동 반을 구성하고, 전문조직은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별표와 같이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건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 지원	⑥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

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⑦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해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⑧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 업무상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③ (생략)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정비,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반을 대표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행한다.

⑥ (생략)

제5조(해임) <신설>

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비상연락망 정비 -----
-----.

⑤ ----- 해당 반을 -----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해촉) 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 및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생략)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6. ~ 9. (생략)

10. 재난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응급구호 및

3.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

--- 해촉-----.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임무) ① ----- 예방·대비·대응·복구 ----- 임무의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신고·정비

3. -----
----- 대피소 등 -----

4. (현행과 같음)

5. -----

----- 통제 등

6. ~ 9. (현행과 같음)

10. 재난발생 시 -----
----- 구조 및 연락

통신·연락체계 유지, 교통통제 등 활동 전개

③ (생략)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방재단 관리시스템,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체계 유지, 차량통제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소집 등) ① -----

----- 협의하여야 --.

② ----- 전화 -----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소집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⑥ 소집수당은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

<신 설>

제9조(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위험요인 신고)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1항의 신고를 한 단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① · ② (생 략)

무 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 임무
등-----
-----.

<삭 제>

제10조(재난위험요인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예
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

제11조(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 6. (생략)

④ (생략)

⑤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2조(금지 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제13조(출입증의 발급) ① (생략)

② 구청장이 발급한 출입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4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 할 수

③ -----

-----.

1. -----
----- 식비, 여비, 유류비 -----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

----- 봉사활동증명서 -----
-----.

제12조(금지 행위) 단장 및 단원-----

-----.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출입증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4조(교육) ① -----
----- 것 -----

-----.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강남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훈련) ① -----
----- 것-----.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u>제21조</u> (생 략)	<u>신분증 사본</u>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 <u>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 관</u>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 <u>한 신분증 사본</u> ⑤ <u>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 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 여 환수조치 한다.</u> <u>제22조</u> (현행 제21조와 같음)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9. 12. 18.>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대표, 부대표,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18.>

② 단장은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별표와 같이 각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⑤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대표는 해당 반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삭제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해당 반을 대표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8.>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단,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개정 2009. 12. 18.>
2.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09. 12. 18.>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난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 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에 관해 강남구자율방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7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소집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⑥ 소집수당은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 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위 관리, 동보전송을 통한 소집, 협의회의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을 위해 강남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② 구청장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단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방재단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위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동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⑤ 삭제

제10조(재난위험요인 신고) ①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터넷 또는 팩시밀리로 단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신고 후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후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1항의 신고를 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8.>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 <개정 2009. 12. 18.>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6.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⑤ 구청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09. 12. 18.>

제13조(출입증의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4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강남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

적인 사항에 필요시 중앙지원단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17조(대표자 회의) ① 단장은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등의 논의를 위해 각 반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단장이 된다

③ 대표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감독 등)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제19조(자율방재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위하여 강남구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12.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2.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재난관리분야 위원회 소속 구의원
4. 관련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⑦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20조(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자문·제안 할 수 있다.

1. 방재단의 활동 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
2. 재난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정책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등

제21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